

■ 법률 칼럼

# 부모 시민권 취득 시 18세 미만 자녀의 자동 시민권 취득

2001년 시민권법에 따르면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1년 시민권법 규정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권법은 2001년 2월 27일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권법은 18세라는 나이뿐만이 아니고 그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 되기 위한 상세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18세 미만의 자녀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둘째, 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가 현재 시민권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여건 3가지 요건 즉 1) 18세 미만 2) 영주권자 신분 3) 시민권 부모와의 동거 중 한 가지만 충족이 되지 않아도 그 자녀는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7살의 영주권자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그 17세 자녀는 시민권 취득 가능 연령인 18세가 되었을 때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여 시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권 부모와의 동거 조항이 충족되지 않아 시민권 자동 부여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 남은 이슈는 이 자녀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서류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한인 청소년들이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 진학함에 따라서 시민권자임을 서류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증가했고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임을 서류로 증명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여권을 미국 국무성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 부모의 시민권 증서, 자녀와 그 부모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자녀의 영주권 등을 국무성에 제출하면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 여권이면 충분하지만,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관학교 등에 지원하는 경우에 시민권 증서의 일련번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명방법으로 시민권 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N-600이라는 시민권 증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례를 보면 어릴 때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는 데도 N-400라는 시민권 증서 신청이 아닌 시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장례 칼럼

# 화장

며칠 전 80을 바라보는 한 분을 만났다. 지금도 사업을 하시고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다. 내가 장의사인 줄 아신 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으셨다.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할까? 생각 중이요. 요즈음 얼마나(경비) 합니까? 몇 일이나 걸려요? 내가 좋아하는 공원에 뿌리면 됩니까? 이 민생활의 연수가 길고 어른의 위치에서 사별과 장례를 여러 번 봐 왔으나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계셨다. 이 질문은 아주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들이다. 아래의 몇가지 설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화장이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난 후 남기는 시신을 고온의 불을 사용하여 소각시키고 뼈를 추수하는 장례 방법이다. 사망이 선언되면 선택한 장의사의 주관으로 장례가 진행되며 화장은 전문 화장터를 사용하게 된다. 경비는 전반적인 장례 예식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한인들에게는 별로 사용되지 않지만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있다. 기본적 화장(Direct Cremation)이란 돌아가신 곳에서 시신을 모시고 간 후 화장하여 유골을 가족에게 돌려드리는 방법이다. 가족들이 망인을 다시 보지 않기에 가장 간단하고 저렴하다. 둘째, 가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망인이 돌아가신 장소에서 장의사로 옮겨진 후 운명할 당시 참석하지 못한 가족이 가족들과 함께 장의사로 와서 망자의 모습을 본 후에 화장하는 순서이다. 이후 유골을 모시고 교회나 예식 장소를 빌려 추모식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은 사회장이다. 망인을 관에 모시고 장례식장이나 교회 혹은 공공시설에서 환송 예식을 한 후에 화장을 하는 순서이다. 경비는 순서에 따른 준비와 시설 사용에 따라 달라진다.

화장을 하기에 알아야 할 필수 조건이 있다. 화장은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정을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있

는데 순서(Order of Next Kin)가 있다. 1. 본인의 유언과 지시 (공증되어야 함) 2. 본인이 지정한 결정권 위임자(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3. 배우자 (Surviving Spouse) 4. 자식들(과반수 동의) 5. 부모 6. 형제 등으로 차례가 이어진다. 만약 혈육의 연고자가 없거나 기한 내에 찾지 못하면 공공행정관(Public Administrator)이 결정하게 된다.

장례의 기간은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가족이 원하는 바이다. 하지만 남가주의 현실은 차이가 있다. 대개 선정된 장의사(Funeral Director)에서 망자를 모셔가고 다음날 혹은 가능한 빨리 유가족과 모여 장례 일정을 잡는다. 장의사가 의사로부터 사인을 받고 사망증명서와 화장허락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 후에 화장터와 화장일 스케줄을 잡는다. 미국의 타주에서는 그리고 중소도시에서는 화장 장례 예식이 약 일주일만 끝난다. 하지만 남가주는 인구에 비하여 제한된 수의 화장터 때문에 화장하는 장의 예식이 턱없이 늦어진다. 뿐만 아니라 남가주의 큰 장례모지회사는 시신을 모셔가고 한주 혹은 더 후에 가족들과 장례 상담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유가족들이 장의사를 만나 상담하고 사망증명서를 작성할 때에 유골을 언제 어디에 안장할 것인지 명시하여야 한다. 어느 묘지에 묻는다 혹은 어느 묘지의 납골당에 모신다. 아니면 집에 모실 것이며 집, 혹은 바다에 뿌리면 어느 카운티 인접 해안이라고 사전에 보고하여야 사망증명서와 화장허락서가 발급되고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호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